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시

훈계대상자 ○○○○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7. 1.부터 현재까지 ○○○○시 에너지재생
과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
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
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
급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
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전설비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사업에 부수되는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허가부서는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됨 없이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 ○○○○○과에서는 2017년 6월의 기간 동안 [붙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면서 설치장소가 같은 지번인 15건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발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전기공급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일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함에도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전기사업허가를 내어 주었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붙임]의 사업자에 대해 배전선로 연계 가능여부 등을

한국전력공사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허가담당자는 대부분의 타 시도 역시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설비용량 2,000kW 이상인 경우에 한국전력공사에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하면서¹⁾, 전기사업을 허가하였다고 바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지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가 더 있으므로 별 문제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발전설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전기공급설비의 도시·군계획시설 미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공급 연계가능 여부 관련 의견조회 미실시로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의 확인이 안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기사업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부적정하게 전기사업 허가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인근 도시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근 ○○광역시에서는 설비용량이 14.91kW임에도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동일한 사업담당자가 설비용량이 2,000kW이상인 전기사업 허가내용 중 의견조회를 실시한 경우와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였다.